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1242
----------	------

2020년 2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월 13일, 송도호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년 1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0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도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함으로써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자진반납 이후 이동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도 시행결과 고령운전자 1만5천명이 자진반납을 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100분의 50에 불과한

7천5백명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크게 증가한 바, 시장은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문화하여 당초 취지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에 따른 안전한 교통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령운전자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6호)
- 고령운전자 용어를 반영함(안 제14조제1항)
-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형평의 문제없는 시장의 재정 지원 책무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항).정지원 책무를 규정함(안 제4 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2. 4 ~ 2. 1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원안동의

- 지원대상을 “주소를 둔 자”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주민등록을 둔 자”로 변경(서울시 단순거주 외국인은 추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19년 최초 시행 결과 자진 반납자 1만5천명 중 교통카드 미수혜자 5,900여명은 2020년 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반납자 중 미수혜자는 발생하지 않음
- 2020년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급 업무가 원스톱으로 시행됨으로, 자진반납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교통카드 지급 가능함에 따라 형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게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지원대상자 조정 관련(안 제14조제1항 관련)

- 동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현행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에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1)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일치시키는 것은 조례

1) 각 조례별 지원 대상

관 련 조 례	지 원 대 상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적용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조례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향후 동 사업의 목적, 교통사고 감소 효과 및 예산반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주민²⁾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가 있는 것임

■ 운전면허 반납자 전체에 대한 예산 지원 노력 관련(안 제14조제2항 관련)

-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10,155건에서 2017년에 26,713건으로 10년간 163%나 급증함³⁾에 따라 고령자운전자 사고에 대한 감소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⁴⁾를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자 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음
- 2019년 사업추진 당시 서울시는 총 7억50백만원(티머니복지재단 기금 1억원 및 추경편성 예산 6억5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 서울시 통계자료(2018) : 서울시 70세이상 외국인 주민은 8,188명, 60~69세 외국인 주민은 41,854명임

3)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18.10.2.) : 급속한 고령사회의 먹구름이 도로 위를 덮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4조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 서울시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함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및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호응이 상당히 높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신청자가 약 14,540명에 달하였음

- 이로 인해 서울시는 2019년 전체 신청자 중 약 1/2 수준인 7,500명만 지원하였고, 나머지 지원자 중 타 지방자치단체 중복수혜자(1,140명)을 제외한 5,900여명은 2020년 대상자로 지원이 미뤄져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

- 또한 서울시는 2020년 관련 사업 예산으로 총 8억 30백만원⁵⁾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신청자(5,900명)를 우선 지원할 경우 2020년에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1,60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2020년에 지원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당해 년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신청자의 불만이 제기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전체 신청자에게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실제 사업시행 시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하여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약 29만여명⁶⁾의 65세~69

5) '20년 서울시 고령운전자 지원 예산 : 8억30백만원(지원금 7억50백만원, 카드제작 50백만원, 카드발송 30백만원)

6) 서울시 연령대별 운전면허 소지자 : 교통운영과-3219호 자료

세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는 고령운전자 사고감소를 위한 동 조례의 목적, 예산 지원의 효율성 및 고령운전자 사고감소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원정책 및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연령	총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세이상
운전자수	628,467	289,889	184,099	102,976	38,874	9,883	2,089	65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령운전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를 “고령운전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고령운전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p> <p>① ----- <u>고령운전자가</u> ----- ----- ----- ----- ----- -----.</p> <p>② <u>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u></p>